

##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57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삼성그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8.05.20 - 2009.05.19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투자신탁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굿모닝신한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SK증권, 동부증권,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, 미래에셋증권

### 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08.08.19 삼성 KODEX 삼성그룹주 상장지수투자신탁	투자신탁보수의 변경	<b>제38조(투자신탁보수)</b>  ① ~ ③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 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 액으로 한다.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분의 3.3 2. 지정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분의 1.0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분의 0.3	<b>제38조(투자신탁보수)</b>  ① ~ ③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 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 액으로 한다.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분의 3.05 2. 지정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분의 0.5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분의 0.2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분의 0.25

		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	
2009.05.03 삼성 KODEX 삼성그룹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	자통법전환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으로 전환	삼성 KODEX 삼성그룹주 상장지수투자신탁	삼성 KODEX 삼성그룹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220,000원	서면계약	-	-	-	-	-

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 사항 없음
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회사인 삼성투자신탁운용(주)의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